

의안번호	제3071호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6. 3. 13.

#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071호
----------	--------

제출연월일: 2026. 3. 13.

제출자: 고성군수

## 1. 제정이유

고성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평생학습관의 기능 등(안 제1조~제5조)
- 나. 시설 사용 승인과 취소 등(안 제6조 및 제7조)
- 다. 사용료 및 수강료 등(안 제8조~제10조)
- 라. 강사 위촉 및 해촉(안 제11조 및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제21조
-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반영[복지지원과-3621(2026. 1. 20.)호]
-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134호

가) 예고기간: 2026. 1. 20.~2026. 2. 10.(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 4. 본문: 붙임과 같음

##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고성군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화실, 강의실과 사무실 및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 회의, 강연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규정된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강료”란 학습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위치) 학습관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35-14에 둔다.

제4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 및 요구도를 고려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4.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6.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7.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학습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사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사용 허가 등) ①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전에 사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사용 1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의 제한 등)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학습관 운영의 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만취한 자
6. 고의적 방해, 폭언·폭행, 성희롱·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행위 등 학습환경을 심각히 저해하는 자
7.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학습 환경 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료 등) 학습관의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별표 1의 감면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 등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학습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른 반환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강사 위촉 등) ① 군수는 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강사 해촉) 군수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강사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제12조부터 제14조까지)과 제5장 수강료 등(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 수강료 및 사용료(제6조 관련)

### 1. 사용료

구 분	단 위	금액	비 고
강의실, 정보화실	2시간	50,000원	※ 최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냉난방기 2시간 이상 사용 시 초과사용 료의 50%를 가산한다(2시간까지는 무료). ※ 1일 최대 200,000원으로 한다.

### 2. 수강료

프로그램 구분	기준액	비 고
10시간 이하	10,000원	○ 1인 1개 프로그램 기준 ○ 재료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
20시간 이하	20,000원	
21시간 이상~40시간 이하	30,000원	
40시간 초과	40,000원	

### 3. 수강료 감면 기준

구분	감면 사유
전액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이나 가족 마.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바.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액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나.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세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 1. 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사유인 경우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날	사용료 전액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인 경우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사용 예정일 당일	반환 없음

### 2. 수강료 반환 기준

구 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 사유인 경우	강좌를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	강의 개시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강의 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 하는 금액
	총 강의 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 하는 금액
	총 강의 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 개시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강의 개시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강의 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강의 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li> <li>· 반환금의 원 단위는 절삭한다.</li> </ul>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가. 비용발생 요인: 제5조(관리 및 운영), 11조(강사 위촉 등)

나. 소요예산: 총 53,042천 원(연간)

1) 평생학습관 관리 근로자 인건비: 22,482천 원

가) 기본급:  $2,156,880\text{원} \times 9\text{월} \times 1\text{명} = 19,412\text{천 원}$

나) 연차수당 및 4대 보험료: 3,070천 원

2) 평생학습관 일반운영비: 15,200천 원

가) 사무관리비(각종 운영 소모품): 4,950천 원

나) 공공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10,250천 원

3) 강사 수당: 15,360천 원

-  $480\text{천원} \times 8\text{월} \times 4\text{명} = 15,360\text{천 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작성자: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 1. 28., 2016. 5. 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의2. 삭제 <2025. 11. 11.>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시행일: 2027. 5. 12.] 제21조